

서울대학교 환경안전관리규정

제정 1995. 8. 24 규칙 제1966호
개정 2002. 6. 07 규칙 제1351호
전문개정 2003. 3. 25 규칙 제1378호
개정 2005. 2. 13 규칙 제1474호
개정 2007. 2. 09 규칙 제1592호
개정 2008. 2. 19 규칙 제165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환경 안전을 위한 환경오염방지·환경안전교육·안전 점검·안전사고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실험·실습을 수행하는 대학(원), 연구소 및 부속기관 (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과 이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생 및 연구원에 적용한다.

제3조(환경안전관리위원회) ①환경 및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환경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연구처장·시설관리국장·생물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수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실험·실습실 안전 점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3. 실험폐액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대한 안전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관리기관의 장 및 환경안전관리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 및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관리기관) 관리기관의 장은 환경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안전관리자의 지정
2. 환경안전교육 대상자 선정
3. 실험·실습관련 유해물질의 관리
4. 실험실 안전사고 발생시 원인, 경위 조사, 사후처리 및 대책강구
5. 기타 환경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관리기관별 환경안전위원회)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 규정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리기관별 환경안전위원회(이하‘관리기관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동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관리기관위원회 위원은 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관리기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안전관리 준수사항 제정
2.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시설의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미 이수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4. 실험실 안전사고 대책
5. 기타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환경안전관리자) ①관리기관의 장은 실험·실습실별로 당해 실험실을 사용하는 전임 교수 중에서 환경안전관리자 (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실험·실습실 자체 안전 점검, 실험실 종사자의 환경안전교육 이수 조치, 안전사고의 예방, 폐기물의 관리, 기타 환경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환경안전교육) ①안전원장은 환경안전교육을 주관한다.

②교육대상자는 관리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생 및 연구원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환경안전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명단을 안전원장에게 제출하고, 안전원장은 교육일정 등을 관리기관에 통보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미 이수한 자에 대하여 실험·실습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8조(실험·실습실 안전점검) ①안전원장은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

②안전원장은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일정기간 해당 실험·실습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안전원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한 행정적 편의를 요청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실험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①안전원장은 실험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처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관리자는 처리지침에 의거 실험폐액을 분별 수집하여 그 처리를 안전원장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실험폐기물 등 처리 부담금) ①안전원장은 실험폐기물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해당기관에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된 부과금액·부담금 사용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1조(오염도 측정 및 배출규제) ①안전원장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관의 오염도를 측정, 매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안전원장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관이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과 지역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배출기관의 실험·실습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1(안전사고처리)①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사고경위서를 3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 및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신체장해 또는 1억원 이상의 대물피해 등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관리기관의 장 및 안전원장에게 사고내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대한 안전사고 이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안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안전원장은 제2항의 사고처리 결과보고가 미흡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장,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전문가 약간 명으로 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그 위원장은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된다.

⑤안전원장은 안전사고의 경위 또는 사후처리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내용을 연구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의2(시정요구 등) ①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 및 관리자가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사고경위서를 3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 및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리기관의 장이 부적격자를 관리자로 임명한 경우
3. 관리기관의 장이 환경안전교육 미 수료자의 실험실 출입을 방치한 경우
4. 관리기관의 장이 안전사고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안전원장은 관리기관 및 관리자가 「처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실험폐액 및 방사성폐기물 수집 중단
2.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실험실의 경고 또는 폐쇄 요구

제13조(보험가입 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보험금액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제1656호, 2008.02.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